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1
----------	-------

제출년월일 : 2024. 2.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제정·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 조례 개정 목적 및 용어 정비(조례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조례안 제3~4조)

다. 타기관(학교, 체육회)의 협조 및 지원사항 신설(조례안 제9조~10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1. 18. ~ 2. 7.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을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으로, “생활체육의”를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으로,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주사무소가”를 “「스포츠클럽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있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을 “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중인 체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클럽의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
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
3. 인건비·임차료 등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1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포구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 특별시 마포구 <u>생활체육의</u>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u>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 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u> <u>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 “스포츠클럽”이란 <u>주사무소가</u>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u> <u>다)에 있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u> <u>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3. (생 략)</p>	<p>제1조(목적) ----- 「스포츠클 럽법」 제3조제3항----- --- <u>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u>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u> <u>특별시 마포구의 생활체육 기반조</u> <u>성 및 -----</u> <u>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u> <u>역체육 발전과 스포츠복지 향상에</u> <u>기여함 -----.</u></p> <p>제2조(정의)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p> <p>1. -----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 ----- <u>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u> <u>을 위하여 운영되는 ---.</u></p> <p>3. (현행과 같음)</p>

<신 설>

<신 설>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클럽의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
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
3. 인건비·임차료 등 지정스포츠 클럽의 운영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신설>

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4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지도·감독) ① -----
----- 제4조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1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신 설>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포구체육회에 소속된 생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
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
3. 인건비·임차료 등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체육진흥과 최영민
연락처	02-3153-9864